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. 6. 9 선고 2020가단100770 판결 [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0. 12. 16 선고 2020나311570 판결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. 6. 9 선고 2020가단100770 판결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주식회사 A

피고 1. B

2. C

피고 1, 2의 소송대리인 D

3. D

변론 종결 2020. 5. 26.

판결 선고 2020. 6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에게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같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원고(선정당사자)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0%는 원고(선정당사자)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들에게 위 건물 철거비용의 부담을 구함.

이 유

1. 사안의 개요 및 판단

가. 원고(선정당사자. 이하 '원고'라 한다)와 선정자는 별지2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공유자로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/3 지분, 선정자는 1/3 지분을,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10/210 지분, 선정자는 5/210 지분을 각 보유한 사실,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소유한 E가 2016. 11. 23.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위 망인을 공동 상속(피고 B 3/7, 피고 C, D 각 2/7 지분)하고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6느단609호로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7. 1. 4.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3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.

나. 원고가 피고들이 위 건물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(위 건물 소유를 위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이 소멸하였다)는 이유로 방해배제청구 내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데 대하여,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바,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및 선정자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한편,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건물을 철거하면 앞서 본 한정승인심판의 취지에 반하게 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한정승인제도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인데, 피고들이 상속채무인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들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위험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, '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

내에서'라는 제한도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. 또한,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288조의 적용을 주장하나, 그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.

다. 그밖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비용의 부담(지급)도 구하나, 이는 이 판결에 따른 집행비용의 일환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국현

별지